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 마련
-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1조)
- 조직명칭 변경 반영(안 제1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「전자정부법」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1항 □□멀티미디어 산업발전 등 사업 수행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”을 “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역 멀티미디어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
2.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
3. 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

제19조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고, <u>멀티미디어 산업발전 등 사</u> <u>업 수행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</u> <u>간기관 ·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</u> 을 할 수 있다.	제11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----- ----- -, <u>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</u> <u>관 · 단체 등에 각 호의 시행에</u> <u>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</u> 을 할 수 있다. 1. <u>지역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</u> <u>에 필요한 사업</u> 2. <u>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</u> 3. <u>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</u> <u>업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----- -----, 특정 기술에 종속 되지 않도록 <u>안전행정부장관</u> 이 고시하는 □□웹표준□□을 준수하 여야 한다.	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-- ----- -----, 특정 기술에 종속 되지 않도록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이 고시하는 □□웹표준□□을 준수하 여야 한다.

관련법령

□ 국가정보화 기본법

제16조(지역정보화의 추진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·도시에 대하여 행정·생활·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(이하 □□지역정보화 □□라 한다)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, 재정,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전자정부법

제65조(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역사, 문화, 복지,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
2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
3.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

4.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

5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

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소관 실·과		정보통신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이 대 창
	계 장	이 윤 환
	담당자	이 강 자 (480-6652)